

## 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30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.

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### 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<br>위반 |
| 가.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 | 법 제53조    | 250    | 350   | 500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제1호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나.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2항제1호 | 150 | 250 | 300 |
| 다.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4항제1호 | 20  | 50  | 100 |
| 라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추정자를 3회 이상 알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2항제2호 | 20  | 30  | 50  |
| 마.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2항제3호 | 150 | 250 | 300 |
| 바. 법 제26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,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·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 | 법 제53조 제2항제4호 | 150 | 250 | 300 |
| 사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1항제2호 | 250 | 350 | 500 |
| 아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1항제3호 | 200 | 300 | 500 |
| 자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4항제2호 | 20  | 50  | 100 |
| 차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3항제1호 | 100 | 150 | 200 |
| 카.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4항제3호 | 20  | 50  | 100 |
| 타.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53조 제2항제5호 | 150 | 250 | 300 |
| 파.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·등록기관·뇌사판정기관·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·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| 법 제53조 제3항제2호 | 100 | 150 | 200 |